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7년 1월 26일

제안자 : 박영웅 의원의 6

□ 제안이유

○ 조례안 제1조의 조문 중 본 감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설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한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”의 조문은 지난해 2006년 12월 20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전부개정으로 조례 설치법령근거가 변경되었기, 법령근거를 개정 법령에 일치시키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○ 제정안 제1조 중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)”을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로 함.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정안 제1조 중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(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)”을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로 함.

수정안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「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)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